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암등록통계에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등 포함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2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암등록통계에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등 포함	2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3. 4.
- (3) 회 부 일 : 2025.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암등록통계에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등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에 속하는 통계의 종류에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 및 성별·연령·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른 통계(이하 “사회집단별 통계”)를 명시하여,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며 사회집단별로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u>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u> (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 ----- ----- ----- <u>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u> ----- ----- -----

현행	개정안
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정(2003. 5. 29.)에 의해 통계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¹⁾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동법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에 근거하여 국립암센터에 의해 매년 12월 ‘암등록통계’가 공표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제8호²⁾ 등에 근거하여 ‘건강검진 통계’ 및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매년 12월에 공표하고 있으며, 해당 통계들에는 암과 관련된 통계가 일부 포함됨.
- 암등록통계, 건강검진 통계 및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수록된 암 관련 주요통계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암관리법」 [법률 제6908호, 2003. 5. 29. 제정]

제8조 (암등록통계사업의 실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표 1] 암 관련 주요통계 목록
(암등록통계, 건강검진 통계 및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수록 기준)

암등록통계	건강검진 통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암발생률 - 암발생 순위(성별/연령군별) - 암 발생 확률 - 지역별 암발생률 비교 - 성별 주요 암종 암발생 추이 - 암발생률 국제 비교 암유병률 - 주요암 유병률(일반/5년) - 주요암 유병률(성별/연령군/암종별) 암상대생존율 - 5년/10년 암상대생존율(암종/성별) - 요약병기별 5년 암상대생존율(암종/성별) 암관찰생존율 - 5년/10년 암관찰생존율(암종/성별) - 요약병기별 5년 암관찰생존율(암종/성별) 상피내 암발생률 - 상피내암 발생 순위(성별/연령군별) - 성별 주요 상피내암종 발생추이	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 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직역별/성별/시·군·구별/연령별) - 검진 결과 판정현황(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별)	주요 암질환 급여현황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주요 암질환 급여현황(위암, 간, 기관지 및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료: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22년 암등록통계)』(국립암센터, 2024. 12.),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12.) 및 『2023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12.)를 바탕으로 재작성

□ [표 1]을 보면 암등록통계, 건강검진 통계 및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암발생률·유병률·생존율, 암검진 수검 현황, 암질환 급여현황 등이 통계종류에 따라 성별·연령·지역·암종·건강보험직역³⁾별로 수록되어 있음.

3)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 가입 구분

- 다만 각 통계들에는 사망률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암 관련 통계자료와 사망률이 연계되어 파악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통계에 건강보험직역별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에 현행의 암 발생률·생존율 외에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암 관련 실태를 파악⁴⁾하고, 국민의 암 검진 수검률·발생률·생존율·사망률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질환과 관련된 기타 법률의 통계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통계에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률자의 재발 및 후유 장애 현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치매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결핵예방법」에서는 통계에 포함될 상세한 내용이나 지표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표2]).

4)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은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암검진 수검률, 암 생존율 및 암 사망률 등의 지표가 취약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함.

: “소득 수준에 따른 암검진 이용 형평성 연구: 집중지수와 집중지수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허종호·황종남, 보건사회연구 34(3), 2014.)”, “국가 암검진 사업의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과 사회경제적 수준 및 요약병기의 관련성(강정희·김철웅·권순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22.)”, “Insurance Types and All-Cause Mortality in Korean Cancer Patien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Shin J, Bae YJ, Kang HT, J Pers Med, 2024.)” 등

[표 2] 질환관련 주요 법률의 통계관련 조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결핵예방법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u>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u>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발생 위험요인, 발생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자료: 각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 한편, 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는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통계 작성작업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⁵⁾의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점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 「암관리법」의 암등록통계, 「건강검진기본법」의 암검진통계 및 「통계법」의 사망원인통계와 같은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가 생산·공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는 「통계법」에 의거 현행 국가승인통계의 항목을 추가하여 통계청 협의·승인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통계청)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암사망률을 성별 및 연령별로 공표하고 있음. 또한 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기관 자료를 연계할 경우 등에 있어 개인식별 우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암등록통계 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및 사망률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29, 발의일 2025.3.4.)

: 암등록통계에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등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우리 공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목적인 사회집단별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 산출이 가능하고, 해당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협의를 거쳐 공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설조항 없이도 법안 발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509